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업체의 선정기준(제57조제4항 관련)

항 목	가중치	적용기준
1. 서류의 정확도	(10)	
가. 구매국의 정부기관 발행의 구매의향서(LOI) 제시(원본)	7	가.항목과 나.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항목을 적용한다.
나. 구매의향서(LOI)에 준하는 경우	7	구매국 정부가 LOI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현지무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식문서에 의한 추천획득(단순확인의 경우 제외)	3	
2. 방산물자의 수출기여도(최근 3년간)	(55)	가중치×연도별 배점비율 × $\frac{\text{해당업체 실적}}{\text{신청업체 중 최다실적}}$
가. 해당국가에 대한 수출실적	10	※ 연도별 배점비율
나. 해당품목의 수출실적	10	해당연도 - 2년 : 20%
다. 해당국가에 대한 해당품목 수출실적	20	해당연도 - 1년 : 30%
라. 유사품목의 수출실적	10	해당연도 : 50%
마. 기타(당해연도 수출실적·수출허가 현황 등)	5	※ 다만, 함정 등과 같이 제작기간이 2~3년 이상 소요되는 품목이 최근 3년내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주연도를 해당연도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 다른 수출업체를 통하여 수출한 제조업체의 수출실적은 가중치의 75퍼센트를 적용한다.
3. 수출상담 노력도	(25)	
가.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 참가승인의 유효기간내의 경우	10	기득권을 인정하되, 악용시에는 추천에서 제외한다.
나. 수출예비승인, 국제입찰 참가승인 또는 견본수출허가의 신청횟수가 많은 업체	5	최근 3년간 해당국가에 대한 신청횟수가 많은 업체순으로 각각 5점, 3점 및 2점을 배정한다.
다. 관측활동(관련인사 등의 초청)	10	

4. 수출상담 유리도	(5)	
가. 자체 생산시설 보유	3	
나. 해당국가에 현지 지사 설치	2	
5. 수출상담 진행보고 등	5	해당국가, 해당품목에 대한 수출상담보고등을 기준으로 우수한 업체순으로 각각 5점, 3점 및 2점을 배정한다.
6.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15)	최근 3년간의 통제를 기준으로
가. 경 고	-5	1회 위반시마다 누적 적용한다.
나. 형사처벌	-10	